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4
----------	------

제출년월일 : 2013. 06.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변경
 -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 “충주시 정보화 조례”
- 나. 정보화 추진 심의기구 설치·운영 등(안 제6조)
 - “충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충주시 정보화위원회”
- 다. 정보화 추진방향 설정 등(안 제9조~14조)
- 라.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안 15조~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2013. 04. 30 ~ 5. 20)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 정보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시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 지역 주민, 장애인, 노인 등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 능력의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 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 체계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고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6조에 따른 충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확산
7.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과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상급기관의 장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충주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충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관련 업무 실·과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주무담당자이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과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시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와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받는 사람은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 제품이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과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장 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수립
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당) 조정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①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의 안 명 :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관련조문

제6조(정보화위원회)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민간 사업자와 민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② 시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 제품이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1.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5.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3. 미첨부 사유

- 참석위원 수당·여비(70천원×12명×2회=1,680천원)
- 정보통신 서비스 우수이용자 보상(년 1회, 3백만원 정도)
- 민간 투자 관련 지원(선언적, 권고적 내용)
- 정보화 교육 기반 확충(선언적, 권고적 내용)
- 정보취약계층 지원(선언적, 권고적 내용)

4. 작 성 자 : 기획행정국 정보통신과장 이 병 훈